

결혼이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결혼 관련법 · 제도 개선 소고*

- 독일의 관련법 ·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김 중 길**

I. 들어가며

다양한 방면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국제결혼은 우리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이끄는 근간이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현재도 국제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¹⁾ 다문화 가족을 구성하는데 국제결혼중개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제결혼중개업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사례가 잦고 또 피해 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면서 그것의 가치와 중요성이 많이 낮아진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결혼중개업이 건전한 결혼문화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고 한다)을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²⁾ 그 이후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자격과 의무

* 이 글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한 “주요 국가의 법제 시사점을 통한 결혼중개업법 개정 검토 회의” 워크숍(2021. 5. 6.)에서 주제발표한 것입니다.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법학박사(Dr. jur.).

- 1) 한국인배우자의 연령은 40대가 61.3%로 가장 많고, 외국인배우자는 20·30대의 비율이 79.5%를 차지했으며, 출신국은 대부분 베트남(83.5%)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중개업 이용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2021.4. 참조.
-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개정 경과 및 내용 등 보다 자세한 법적 현황에 대해서는 김중길, “계약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결혼중개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제30권 제1호(통

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면서 각종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선해야 할 문제들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해외 사례 검토의 일환으로서 독일의 국제결혼 관련 법·제도에 대한 계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의 국제결혼 관련 법·제도를 차용하는데 난점이 있을 수 있다.³⁾ 그러나 전후 시대부터 러시아, 터키 등 이주민이 많았던 독일은 오래전부터 국제결혼이 잦았고, 그러한 경험 속에서 발전시켜온 결과물로서의 법·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독일의 민법상 혼인중개와 관련된 논의 및 체류법상 결혼비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관련법·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와 독일의 국제결혼 현황

1. 우리나라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결혼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결혼 및 국제결혼을 합한 전체 결혼 건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즉 2019년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결혼 건수 중 국제결혼 건수는 10.3%에 달하였으며, 특히 2018년 전체 결혼은 약 25만 7천 건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한 반면에 국제결혼은 8.5% 증가하였고, 2019년에도 전체 결혼은 약 23만 9천 건으로 전년보다 7.2% 감소한 반면에 국제결

권 제55호), 한국가족법학회, 2016, 63면 이하 참조.

3) 조은희, “독일의 국제혼인 관련법과 시사점”, 「한양법학」 제25권 제4집(통권 제48집), 한양법학회, 2014, 244면.

혼은 4.0% 증가하였다.⁴⁾

〈표 1〉 국제결혼 건수 및 전체 결혼 중 국제결혼 비중(2017~2019)

(단위: 건, %)

	전체			다문화 혼인*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혼인**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혼인 건수	264,455	257,622	239,159	21,917	23,773	24,721	242,538	233,849	214,438	
비중	100.0	100.0	100.0	8.3	9.2	10.3	91.7	90.8	89.7	
전년 대비	증감	-17,180	-6,833	-18,463	208	1,856	948	-17,388	-8,689	-19,411
	증감률	-6.1	-2.6	-7.2	1.0	8.5	4.0	-6.7	-3.6	-8.3

* 다문화 혼인 : 남녀 어느 한면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 또는 남녀 모두 귀화자인 경우

**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혼인 : 남녀 모두 출생기준 한국인인 경우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보도자료(2020.11.5.)

국제결혼의 유형은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결혼이 2018년은 67%, 2019년은 69.3%로 결혼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⁵⁾

4) 통계청,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20.11. 참조.

5) 통계청,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20.11. 참조.

〈표 2〉 국제결혼 유형별 규모 및 비중(2017~2019)

(단위: 건, %)

	2017		2018		2019		전년대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증감	증감률
다문화	21,917	100.0	23,773	100.0	24,721	100.0	948	4.0
외국인 아내*	14,245	65.0	15,933	67.0	17,136	69.3	1,203	7.6
외국인 남편**	4,294	19.6	4,377	18.4	4,260	17.2	-117	-2.7
귀화자***	3,378	15.4	3,463	14.6	3,325	13.5	-138	-4.0

* 외국인 아내 : 출생기준 한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의 혼인

** 외국인 남편 : 외국인 남자 + 출생기준 한국인 여자의 혼인

*** 귀화자 : 남녀 모두 또는 어느 한면이라도 귀화자인 경우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보도자료(2020.11.5.)

2. 독일

독일은 2019년 현재 기준으로 전체 결혼 건수 약 41만 6천 건 중 국제결혼 건수는 약 4만 8천 건으로 11.6%에 달하였으며, 국제결혼 유형은 독일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결혼이 5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2017년 10월 1일부터는 동성 사이의 결혼이 합법화됨에 따라 동성 사이의 국제결혼도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6) 독일연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Eheschliessungen-Ehescheidungen-Lebenspartnerschaften/Tabellen/eheschliessungen-deutsch-auslaender.html>>.

〈표 3〉 독일의 전체 결혼 및 국제결혼 건수(2015~2019)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결혼				400,115	410,426	407,466	449,466	416,324
독일인	여	외국인	남	20,182	21,375	20,657	21,010	20,968
			여	25,733	26,772	25,672	26,159	25,604
	남					2,228*	1,279	
	여					797*	496	

* 2017년 10월 이후(2017년 10월 1일부터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되었음)

※ 자료: 독일연방통계청 통계자료(2021.1.19. 현재)

2017년도 국제결혼 건수 중 외국인 여자의 국적은 터키(5,314), 폴란드(3,276), 이탈리아(2,619), 오스트리아(974), 그리스(673), 스페인(599), 프랑스(534), 우크라이나(520) 등 유럽국가 순이며, 아시아 5,851명, 아메리카 2,492명, 아프리카 955명으로 나타났다.⁷⁾

Ⅲ. 결혼중개에 대한 계약법적 접근

1. 독일민법상 결혼중개

독일은 민법에서 결혼중개(Heiratsvermittlung)를 전형계약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결혼중개에 관한 조문은 독일민법전 제2편(Buch) 제8장(Abschnitt) 제10절(Titel) ‘중개계약’(Maklervertrag) 이하에 자리하고 있다.

7) 독일연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operation=abrufabelle&levelindex=1&levelid=1619602892329&auswahloperation=abrufabelle&auspraegungAuswaehlen&auswahlverzeichnis=ordnungsstruktur&auswahlziel=werteabruf&code=12611-0003&auswahltext=&werteabruf=starten#abreadcrumb>>.

제10절은 다시 4개의 관(Untertitel)으로 구분되는데, 제1관 일반규정(제652조~제655조), 제2관 소비자소비대차계약 및 유상 자금융통원조의 중개(제655a조~제655e조), 제3관 혼인중개(Ehevermittlung, 제656조)⁸⁾, 제4관 아파트 및 단독주택 매매계약의 중개(제656a조~제656d조)이다.

결혼중개에서는 단 하나의 조문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민법 제656조는 제1항에서 “혼인을 위한 기회의 알선 또는 혼인 성립의 중개에 대해 보수를 약속하는 것으로는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약속에 기해 이미 급부된 것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동법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은 상대방이 그 약속을 이행할 목적으로 중개인에게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약정, 특히 채무승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민법 제656조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중개인이 알선 또는 중개한 파트너와 이용자가 결혼에 성공한 경우이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에서는 독일민법 제652조가 적용된다. 독일민법 제652조는 일반 중개계약에 관한 것으로 동법 동조 제1항은 “계약 체결을 위한 기회의 알선 또는 계약의 중개에 대해 중개보수를 약속한 사람은 계약이 중개인의 알선 또는 중개로 인해 성립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진다. 계약이 정지조건부로 체결되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동법 동조 제2항은 “중개인이 지출한 비용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중개에 관한 민법상 규정에 한계가 있고 그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주로 판례에 기대고 있다. 결혼중개계약의 유형으로는 혼인중개계약, 혼인주선계약, 동반자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⁹⁾ 대체로 중개계약과

8) 한편 우리 민법은 ‘결혼’ 용어 대신에 ‘혼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제3관 표제에서는 혼인중개(Ehevermittlung) 용어를, 그 아래 독일민법 제656조에서는 결혼중개(Heiratsvermittlung)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혼인(Ehe)과 결혼(Heirat)의 의미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며, 이 글에서도 우리 민법 및 독일민법상 조문상 표기 시에만 혼인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고용계약상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혼인중개계약

고전적 의미에서의 결혼중개를 말하는 혼인중개계약(Ehemaklervertrag)은 오늘날 대체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는 입법자의 모범(Model) 개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독일민법 제656조와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을 위한 시작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이용자의 청구권

혼인중개계약은 중개인과 중개를 의뢰한 이용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중개자는 혼인을 위한 기회를 알선하면서 혼인 성립을 위해 중개할 것을 약속하고, 이용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계약이 양자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지더라도 법적으로는 서로 간의 약속에 따른 의무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의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청구권이 없는 것이다.

즉 독일민법 제656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이용자는 중개인으로 하여금 중개를 이행하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급부이행청구권을 집행가능하도록 약관으로 약정할 수 없다.¹⁰⁾ 또한 급부를 대신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청구권도 배제된다. 중개인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행지체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¹¹⁾

그러나 이용자의 이상과 같은 제반 청구권이 배제된다고 하여 중개인의

9) 김두년 외,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제도의 주요국가간 비료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2-17, 2012.11., 17면.

10) BGHZ 25, 124 (126).

11) MüKoBGB/Roth, 2020, BGB § 656, Rn. 9.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중개인은 중개서비스 이행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충실하게 고려해야 할 의무 내지 신의칙상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중개인은 이용자에게 파트너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설명하고 제공하며, 이용자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 중개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적용될 수 있다.¹²⁾

한편 독일민법 제656조 제1항 제2문에 따르면 중개서비스가 이행되었거나 결혼중개의 대가로 기지급한 급부가 있더라도 반환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 소멸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¹³⁾ 또한 이용자가 기지급한 대가는 결혼이 성공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다.

(2) 중개인의 청구권

중개인의 급부청구권도 이용자의 급부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배제된다. 또한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도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중개인이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듯이 이용자 역시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중개인은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용자는 중개인에게 자신의 신상정보,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시에 거짓 내지 흠결없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독일민법 제656조 제1항 제2문의 반환청구 금지 규정에 따라 중개인은 스스로 급부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가를 사전에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독일민법 제656조의 기능을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고 본다.¹⁴⁾

12) MüKoBGB/Roth, 2020, BGB § 656, Rn. 11.

13) MüKoBGB/Roth, 2020, BGB § 656, Rn. 12.

3. 혼인주선계약

혼인주선계약(Eheanbahnungsvertrag)은 주선인과 주선 노무를 부탁한 이용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주선인은 혼인을 주선할 것을 약속하고, 이용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며, 독일민법상 고용계약(dienstvertrag)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혼인고용계약(Ehedienstvertrag)이라고도 한다. 혼인고용계약은 혼인중개계약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서 주선인은 이용자와의 합의에서 약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¹⁴⁾

혼인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중개인이 중개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성공을 이루지 못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결혼 성공에 이르더라도 대가를 청구하지 못하는 가혹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혼인주선계약이라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즉 이 계약은 주선인이 기회를 알선하거나 중개를 하여 결혼 성공에 이르게 하기 위한 행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결혼이 성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주선인의 노무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인주선계약은 주선인이 결혼 성공을 이루기 위해 활동한 시간 내지 기간에 따라 일정한 대가가 결정되는 행위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독일민법상 고용계약에 상응하는 것이다. 독일민법상 고용계약은 제 611조 제1항에서 “고용계약에 기해 노무를 약속한 자는 약정한 노무를 급부할 의무를 지고, 상대방은 약정한 보수를 공여할 의무를 진다.”, 동법 동조 제2항에서 “모든 종류의 노무가 고용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

14) Florian Faust, Widerruf eines Partnervermittlungsvertrags nach § 312 BGB, JuS 2010, 915 (916).

15) 조은희, 앞의 논문, 249면.

고 있다. 고용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주선계약에서 독일민법 제656조가 유사하게 적용된다고 한다.¹⁶⁾ 이 경우 이용자의 보수지급 의무는 선불지급계약으로 대체되고, 독일 판례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¹⁷⁾

혼인주선계약은 보통 약관에 의해 체결된다. 약관의 내용 중 어떠한 상황, 주선인이 아직 어떠한 의무이행행위도 제공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에도 선불지급한 대가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독일민법상 고용계약에서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독일민법 제626조) 및 특별한 신뢰관계를 상실한 경우(독일민법 제627조)에는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다. 이때에는 선불지급한 대가에 대해서도 주선인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¹⁸⁾

4. 동반자계약

결혼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닌 혼외 관계를 주선하는 계약으로 동반자계약이 있다. 이성 내지 동성과의 결합을 위한 것으로서 오늘날은 이 동반자계약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¹⁹⁾ 동반자계약의 유형으로는 동반자중개계약(Partnervermittlungsvertrag)과 동반자주선고용계약(Partnerschaftsanbahnungsdienstvertrag)이 있는데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독일 판례는 이 두 유형 모두 독일민법 제656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²⁰⁾ 현재는 독일민법 제656조가 계약상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각각의 경우

16) MüKoBGB/Roth, 2020, BGB § 656, Rn. 15.

17) BGHZ 87, 309 (318).

18) 독일 판례는 주선인이 중개한 외국인 여자가 외국인 체류허가를 받지 못해 독일에 입국하지 못한 경우에 당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OLG Koblenz NJW-RR 1989, 1074.

19) 독일은 2001년 「생활동반자법」(Lebenspartnerschaftsgesetz, LPartG)을 제정하여 동성 커플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BGBl. I S. 266; 나아가 2017년 10월 1일부터는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되기도 하였다.

20) BGHZ 112, 122.

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동반자중개계약이 결혼주선계약을 대체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의 동반자중개계약이 성행하고 있고, 이는 통신판매계약에 해당한다. 온라인 동반자중개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용자의 철회권²¹⁾과 철회에 따른 가액배상이다.²²⁾²³⁾ 이용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의 기간동안 중개인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이 계약상 명시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부분능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개인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급부를 이행할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에 대해서는 독일 판례는 각각의 사안에서 선량한 풍속의 객관적 판단, 동의 여부, 중개의지, 공간적 거리, 대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²⁴⁾

동반자중개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도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싱글클럽 내지 주말활동클럽과 같은 동반자모임에서는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중개인이 중개 또는 알선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독일민법 제65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혼인중개계약의 성질과 같이 이용자는 급부이행청구권이 없어 중개인에 대한 조치를 강제할

21) 독일은 소비자(제13조) 및 사업자(제14조) 개념을 민법 내에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판매계약 등 소비자계약에서의 철회권(제355조~제361조)도 규정하고 있다.

22) 온라인 동반자중개계약에서 대가는 2,000유로부터 10,000유로에 달하는데, 보통은 2,000유로에서 3,000유로이다. MüKoBGB/Roth, 2020, BGB § 656, Rn. 23.

23) 독일민법상 철회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종길, “개정 독일민법상 철회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청산”, 「민사법학」 제71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6. 참조.

24) 독일 판례는 추가적인 배경정보 없이 대상자의 이름과 연락처만 제공하는 제안에서 1,000유로의 대가를 합의한 경우의 사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이 현저하여 부정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OLG Düsseldorf FamRZ 2010, 2028.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필이 없는 제안에서 500유로의 대가도 인정하지 않았다. OLG Düsseldorf NJW-RR 2009, 1645. 또한 검증되지 않은 주소 2개를 전달하는데 2,500유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우정중개계약(Freundschaftsvermittlungsvertrag)에서도 부정하다고 하였다. AG Aachen NJW-RR 2009, 1644.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혼인주선계약과 같은 성질도 가지고 있다. 즉 중개인은 좋은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중개보수와 같이 당사자들이 선택한 표기는 중요하지 않다. 중개인은 이미 회비로서 대가를 받아 더 이상 성공에 의존하지 않고, 성공한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IV. 체류법상 비자제도

1. 결혼비자

(1) 요건

결혼비자(Heiratsvisum)는 표현 그대로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로서 「체류법」(Aufenthaltsgesetz)²⁵⁾ 제6조 제3항에서 의미하는 국가 D비자이다. 외국인이 독일인과 결혼을 하거나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기 위해 독일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이다. 결혼비자를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첫째, 결혼당사자인 두 배우자가 법적으로 결혼가능한 연령이어야 한다. 독일은 독일민법 제2조에 따라 18세를 성년으로 보고 있고, 독일민법 제1303조에 따라 성년이 되기 전에는 혼인해서는 안되며, 16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의 혼인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혼인의 금지사유가 없어야 한다. 독일민법 제1306조에 따라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이어야 하고(중혼 금지), 독일민법 제1307조에 따라 가까운 혈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독일민법 제1308조 제1항에 따라 혈족관계가 입양에 의해 발생한 사람들 사이가 아니어야 한다.

셋째, A1 단계의 독일어 능력증명이 있어야 한다. 독일어 능력 A1 단계는

25) 체류법의 원래 명칭은 독일에서 외국인의 체류, 직업활동, 통합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이다.

가장 기초 수준의 언어능력이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로서 언어능력이 배제될 수 있다. 연구원, EU블루카드 소지자²⁶⁾, 체류법 제19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거주허가를 받은 자영업자 등 우수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언어능력이 면제된다. 그리고 망명신청자, 난민 등의 피난민,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언어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넷째, 약혼자의 독일 내 거주지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등 독일에서의 생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실제로 결혼을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가장결혼의 의욕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혼인체결과정에서 살핀다. 즉 신분등록청(Standesamt)의 공무원은 실질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 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독일민법 제1310조에 따라 혼인은 신분등록공무원 앞에서 혼인당사자들이 서로 혼인을 성립시키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만 체결되며, 신분등록공무원은 혼인이 취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협력을 거부해야 한다. 혼인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로 독일민법 제1341조에 따르면 16세 미만이 미성년자와 혼인을 한 경우(제1항 제1호), 혼인 금지사유가 있는 경우(제1항 제2호)뿐만 아니라 혼인당사자가 혼인체결시의식상실 또는 정신활동의 일시적 장애 상태에 있었던 경우(제2항 제1호), 혼인당사자가 혼인체결시 혼인이 체결됨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제2항 제2호), 혼인당사자가 사실 상황을 인식하고 혼인의 본질에 관해 올바르게 평가하였더라면 혼인을 성립시키지 않았을 사정에 관한 악의적 기망행위로 혼인의 성립을 결정하게 된 경우(제2항 제3호), 혼인당사자가 위법하게 강박에

26) EU는 역외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물리학, 생물학, 수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연구자 등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고급 전문 인력 이주민 정책에 대한 법(EU 고급인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연봉이 53,600유로 이상(IT 등 전문인력 수요가 높은 '부족 직업군'의 경우 41,808유로) 이면 블루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블루카드 소유자는 33개월간 4대 보험을 납부할 경우 독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독일어 능력이 B1 이상일 경우 21개월이다. 코트라 홈페이지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67&commItemSn=426>>.

의해 혼인이 성립을 결정하게 된 경우(제2항 제4호), 혼인당사들이 혼인체결 시 혼인공동체에 따른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데에 합의한 경우(제2항 제5호) 등이 있다.

(2) 신청절차

외국인이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인이 제반 서류²⁷⁾를 가지고 독일 내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신분등록청(Standesamt)에 결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은 신분등록청이 발급한 결혼신청증명서를 독일에 입국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독일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즉 결혼신청증명서 제출 이후에 결혼비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반 서류²⁸⁾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분등록청에 결혼신청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45유로에서 120유로이며, 결혼비자 신청비용은 75유로이다. 결혼비자는 신청 이후 3개월의 대기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3개월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외국인은 이 기간동안 입국하여 결혼을 해야 한다.²⁹⁾ 입국 후에는 별도로 체류허가를 신청할 의무는 없으며, 관할 거주등록청(Einwohnermeldeamt)에 거주등록만 하면 된다.

27) 독일인은 유효한 신분증, 출생증명서, 거주등록증명서,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이혼 판결문이 필요하며,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능력증명서, 거주등록증명서, 경우에 따라서 결혼등록위장 등이 필요하다. 주한 독일대사관 홈페이지 <https://seoul.diplo.de/kr-de/service/04-Familienangelegenheiten/-/1693956#content_2> 참조.

28) 외국인은 혼인관계증명서,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A1 단계의 독일어 능력증명서, 독일인 약혼자의 여권 사본, 독일 내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우에 따라서는 독일인 약혼자의 의무이행표시, 여행자보험 내지 건강보험증명서 등이다. 주한 독일대사관 홈페이지 <https://seoul.diplo.de/kr-de/service/04-Familienangelegenheiten/-/1693956#content_2> 참조.

29) 독일민법 제1312조는 혼인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분등록공무원은 혼인체결시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들 각자에게 서로 혼인을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고, 당사자들이 이 질문에 긍정한 후에는, 그들이 이제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결합된 혼인한 사람들임을 선언한다. 혼인 체결은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1인이나 2인이 증인이 참석하여 진행될 수 있다.

결혼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관할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에 제출하면, 체류허가증 발급 절차를 밟게 된다. 체류허가 기간은 주에 따라 다르며, 보통 1년에서 3년이 주어진다.

2. 쉥겐 비자

셥겐(Schengen)비자로 독일에 입국할 수도 있다. 이는 관광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6개월 이내에 최대 90일의 단기 체류가 가능할 뿐 결혼비자와 동일하지는 않다. 이론적으로는 독일에서 관광비자 또는 방문비자로 결혼을 할 수는 있으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외국인청에서 발급하는 체류허가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청은 비자 절차 일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청이 사전승인을 허용하면 비자 발급 절차가 빨라질 수 있으나, 이때에는 출국과 재입국을 거쳐야 한다. 반면에 결혼 의사 없이 독일에 입국하였다가 단기 체류 기간동안 결혼 의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인청에서 제반 서류의 일자 및 내용등을 판단하여 별도의 보충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다.

V. 결론에 갈음하여: 시사점

1. 결혼중개계약의 전형계약화(?)

독일민법과 달리 우리 민법은 결혼중개계약 내지 중개계약에 관한 개념을 알지 못한다.³⁰⁾ 그래서 중개는 우리 민법상 전형계약인 위임과 유사한 것으

30)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제692조의7에 따르면 중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체결의 기회를 소개하거나 계약체결을 알선할 것을 의뢰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특히 결혼중개계약과 관련하여서는 2004년 민법개정작업 중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혼인중개’에 관한 규정 신설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전체회의에서 혼인중개 규정은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

로 살피고 있다.³¹⁾ 판례도 중개인이 한국인 남자에게 외국인 “여성을 소개시켜 주고 결혼을 위한 출입국 업무를 비롯하여 혼인의 성립에 필요한 주선 업무를 이행한 후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일종의 민법상 위임계약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³²⁾

독일은 독일민법 제656조에서 결혼중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해당 조문의 내용은 실제 사안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종래의 결혼중개계약은 대체로 사라졌고 동반자계약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계약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개인은 결혼의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중개 내지 알선 행위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계약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독일민법에서 의미하는 고용계약은 우리 민법상 고용계약의 상위 개념에 해당한다.³³⁾ 우리 민법의 고용계약은 자유직업인을 포섭하는 독일의 고용계약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종속적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1인 근로계약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직업인 내지 전문직 종사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민법상 결혼중개계약을 별도로 전형계약화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현재로서는 판례와 같이 위임계약으로 살피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장래의 입법적 해결로서는 중개계약을 전형계약화하여 결혼중개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적용하는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팀,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채권법·부록」, 민법개정총서 4, 법무부, 2012, 530면.

31) 이병준,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의 중개계약과 중개인의 책임”, 「법학연구」 제42권 제1호 (통권 제50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12., 15-16면.

32) 울산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3가단21085, 2013가단21092(반소) 판결.

33) 김중길,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상 서비계약법의 체계”, 「법학논총」 제38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3., 394면.

2. 계약으로서의 결혼중개

독일은 결혼중개업자의 행위 및 의무와 관련하여 우리의 결혼중개업법과 같은 행정적 법률을 두고 있지 않고, 계약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독일은 계약에 따라 중개인에게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즉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 및 이용자와 대상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 등 이용자의 이익을 충실하게 고려하고, 신의칙상 성실하게 중개해야 하는 것이다. 중개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현재 우리 민법에 의해서도 가능할 것이며, 우리의 결혼중개업법에서도 결혼중개업자의 계약상 의무로서 계약내용 설명의무, 계약서 작성 및 보존의무, 신상정보제공 및 기록 보존의무 등을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³⁴⁾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³⁵⁾

물론 중개인이 불공정한 거래 내지 광고행위 등을 행한 경우에는 독일 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의 적용을 받아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는 있다. 결혼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도점검은 당연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결혼중개업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할 필요는 있으나 국제결혼중개업을 비영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제결혼의 음성화 등과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는 자연인 간의 사법상 신분계약인 혼인계약에 대한 결혼중개업에 대한 공익화로서의 정부 개입이 타당한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34) 결혼중개업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로부터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수료 및 회비(97%), 해약시 수수료 및 회비 반환(91.2%), 제공 서비스, 내용, 방법, 기간 및 시기(91.2%), 배상책임 관련 사항(84.8%)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것으로 답하였다. 그리고 외국인배우자의 86.3%가 현지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2021.4. 참조.

35) 김중길, 앞의 '계약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결혼중개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79면.

보충적으로 일본의 국제결혼중개업을 살펴보면 결혼중개업은 자유업이며, 결혼중개업에 관한 독립된 법적 제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수거래 및 소비자계약 관련법률, 특정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의 특별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주로 자국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정부의 행정지도, 우량업체 인증제도, 결혼중개업단체의 자체지침에 따르고 있다.³⁶⁾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해당 법률들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참고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3. 동반자중개계약의 대비

독일은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자연인 간 결합을 혼인관계뿐만 아니라 동반자관계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민법 제656조의 표제가 결혼중개업에도 동반자중개계약을 유추적용하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최근 우리나라는 가족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³⁷⁾ 자연인 간 결합을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동거커플도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민법 제779조³⁸⁾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³⁹⁾ 등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민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과 동시에 우리의 결혼중개업법의 적용범위도 동반자관계에 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

36) 김두년 외,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방안」, 여성가족부, 2010.12., 41면 이하; Yoko Yoshida, “International Marriages in Japan: Present Situation and Issues from a Legal Perspective”, 「아시아 내 국제결혼 관련법과 제도: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IOM이민정책연구원, 2013, 139면 이하 참조.

37) 여성가족부,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2021.4.27.

38) 민법 제779조는 제1항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2항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9)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며,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4. 결혼비자

독일은 독일 내에서 결혼을 하기 위한 외국인에게 결혼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신분등록청에 신청하면 대기 기간의 지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요건을 갖추었다면 거부되는 경우는 드물다. 결혼비자 신청에서 담당공무원은 제출 서류의 형식적인 검토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혼인체결과정에서 가장혼인을 예방하기 위해 독일민법 제1310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결혼의 진정성 있는 의사를 파악하는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한다. 독일의 이러한 절차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요건심사 등 출입국 관리법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⁴⁰⁾ 독일과 달리 결혼이민 사증 발

4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6.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 별표 1의3 영주(F-5) 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9.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가정폭력 처벌법 제29조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시조치 결정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나.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의 보호처분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이 종

급의 요건을 엄격하게 살펴서 가장혼인을 방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혼인신고가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절차적 현실 속에서 발생한다. 즉 혼인신고는 하였는데 사증을 발급받지 못해 외국인 배우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혼중개업자 및 이용자는 각자가 결혼이민 사증 발급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과 같이 결혼 비자를 통한 입국은 비교적 수월하게 하면서 혼인체결과정에서의 실질적 심

료되었는지 여부 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라.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마.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0. 초청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11. 초청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12.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다시 고려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가장 결혼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을 실제로 이용한 외국인배우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⁴¹⁾

다만 그러한 상황 전환이 어렵고,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신상정보제공요건을 결혼이민 사증 발급요건과 같은 정도로 보다 엄격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하고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방안밖에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1)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한 외국인배우자들은 정책건의 사항으로 가장결혼예방(43%), 국제결혼희망 남성 자격(건강, 재산, 경제력, 생활력, 폭력성 등) 도입(39.5%), 결혼중개업체 관리 및 단속 강화(27.9%) 순으로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2021.4. 참조.

〈참고문헌〉

- 김두년 외,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방안」, 여성가족부, 2010.
- _____,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제도의 주요국가간 비료를 통한 제도 개선방안」,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2-17, 2012.
-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채권법·부록」, 민법개정총서 4, 법무부, 2012.
- 김중길, “개정 독일민법상 철회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청산”, 「민사법학」 제71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 _____, “계약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결혼중개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55호), 한국가족법학회, 2016.
- _____, “공동참조기준초안(DCFR)상 서비계약법의 체계”, 「법학논총」 제38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이병준,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의 중개계약과 중개인의 책임”, 「법학연구」 제42권 제1호(통권 제50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조은희, “독일의 국제혼인 관련법과 시사점”, 「한양법학」 제25권 제4집(통권 제48집), 한양법학회, 2014.
- Yoshida, Yoko, “International Marriages in Japan: Present Situation and Issues from a Legal Perspective”, 「아시아 내 국제결혼 관련법과 제도: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IOM이민정책연구원, 2013.
- 여성가족부,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2021.
- _____,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2021.
- 통계청,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20.
- Säcker, Franz Jürgen/Rixecker, Roland/Oetker, Hartmut/Limperg, Bettina,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6, 8.
Aufl., 2020 (MünchKommBGB/Roth 인용).

Faust, Florian, Widerruf eines Partnervermittlungsvertrags nach § 312
BGB, JuS 2010.

【국문초록】

결혼이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결혼 관련법 · 제도 개선 소고

- 독일의 관련법 ·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김 중 길*

이 글은 결혼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결혼 관련법 ·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독일민법상 혼인중개와 관련된 논의 및 체류법상 결혼비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관련법 ·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독일민법 제656조에서 결혼중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조문의 내용은 실제 사안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종래의 결혼중개계약은 대체로 사라졌고 동반자계약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계약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개인은 결혼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 내지 알선 행위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계약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민법상 결혼중개계약을 별도로 전형계약화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현재로서는 판례와 같이 위임계약으로 살피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장래의 입법적 해결로서는 중개계약을 전형계약화하여 결혼중개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적용하는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독일은 결혼중개업자의 행위 및 의무와 관련하여 우리의 결혼중개업법과 같은 행정적 법률을 두고 있지 않고, 계약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할 필요는 있으나 국제결혼중개업을 비영리 사업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법학박사(Dr. jur.).

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제결혼의 음성화 등과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는 자연인 간의 사법상 신분계약인 혼인계약에 대한 결혼중개업에 대한 공익화로서의 정부 개입이 타당한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셋째, 최근 우리나라는 가족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자연인 간 결합을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동거커플도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의 결혼중개업법의 적용범위도 동반자관계에 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넷째, 독일은 독일 내에서 결혼을 하기 위한 외국인에게 결혼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신분등록청에 신청하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거부되는 경우는 드물다. 결혼비자 신청에서 담당공무원은 제출 서류의 형식적인 검토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혼인체결 과정에서 가장혼인을 예방하기 위해 독일민법 제1310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결혼의 진정성 있는 의사를 파악하는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한다. 독일과 같이 결혼비자를 통한 입국은 비교적 수월하게 하면서 혼인체결과정에서의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주제어: 결혼중개업법, 결혼중개계약, 결혼주선계약, 동반자계약, 결혼비자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International Marriage to Protect Marriage Immigrants

Jung Gil KI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mprove th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international marriage to protect marriage migrants. This course focuses on discussions on marriage brokerage under the German Civil Act and on marriage visas under the German Residence Act. Then, a plan was sought to improv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n Germany, Article 656 of the German Civil Act provides rules on marriage brokerage. However, the content of the article is very limited in practical matters. Conventional marriage brokerage contracts have largely disappeared. New types of contracts, such as partnership contracts, are commonly used. And the nature of the employment contract is getting stronger. Accordingly, the broker can be paid for providing brokerage or media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marriage was successful or not.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Act, it is not necessary to convert a marriage brokerage contract into a typical contract. As in Korean precedent, it is reasonable to look at the mandate contract. However, as a legislative solution in the future, it would be better to convert a brokerage contract into a typical contract and apply it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brokerage.

Second, Germany does not have administrative laws such as the

* Research Professor(Dr. jur.), Institute of Law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Marriage Brokerage Act in relation to the actions and obligations of marriage brokers. It is approaching from the contract side.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public interest aspect of the marriage brokerage business. However, converting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business into a non-profit business can raise another problem, such as the voice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principle, a marriage contract is a judicial status contract between natural persons.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as a public interest in the marriage brokerage business would not be valid.

Third, recently, Korea is making an attempt to expand the range of the family. Not only is the union between natural persons achieved through marriage, but also couples living together who share livelihoods and housing are preparing to become families. In line with this tre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Korean Marriage Brokerage Act to the partnership. You need to be prepared.

Fourth, Germany issues marriage visas to foreigners who want to marry in Germany. It can be issued by filling out an application form, preparing all the documents, and applying to the ID Registration Office. This is because when applying for a marriage visa, the official in charge only conducts a formal review of the submitted documents.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prevent marriage in marriage, a practical examination i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sincerity of marriag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310 of the German Civil Act. It would be appropriate to switch to a situation where entry into the country through a marriage visa, such as Germany, can be made relatively easy, while granting substantial control over the outcome of the marriage.

Keywords : Marriage Brokerage Act, Marriage Brokerage Contract, Marriage Arrangement Contract, Partnership Contract, Marriage Visa

